

	교지편집위원회 규정		문서번호		3-4-8	
			제정일		2012. 01. 02.	
			개정일		2013. 03. 01.	
	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학생처

제1조(지위 및 구성) 지위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지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‘백의’ 교지를 편찬, 발행하는 기관이다.
2. 위원회는 교지편집장(이하 “편집장”), 총무, 실무위원, 수습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중 편집장과 총무는 임원이다.

제2조(임원선출) 편집장과 총무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.

제3조(업무 및 권한)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는 교내 ‘백의’ 교지를 발행한다.
2. 편집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확대간부회의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고, 대학의 총학생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.
3.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예산안 및 결산안 계획 보고를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, 학생총회에 공개한다.
4. 기타 교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업무분장은 내부 업무분장표에 따른다.

제4조(회칙) 위원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내부회칙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